

영등포구의회  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 
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4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289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형  
음식점 및 상가의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여 향후  
음식점 등에 선진형 종량제 적용을 시행하여 낭비 없는 음식  
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현물 및 현금의 방식으로  
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(안 제10조의2)

나.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에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안 신설

(안 별표 2)

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 
관련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

(안 별표 3 및 별지 제1호 서식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타구개정 : 용산구, 금천구, 강북구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
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부피형 종량제 시행에  
필요한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의 감면방식을 구체적  
으로 규정하고,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상위법 개정  
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,  
음식점에서 일괄 적용중인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를  
부피형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추가  
신설함.

-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·운반 수수료 감면지원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감면대상자에게 일괄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나, RFID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감면자인 경우에는 지원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음.

따라서 감면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면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.

- 일반 음식업소(200㎡미만) 및 상가에 kg당 114원으로 일괄 적용했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ℓ 당 90원으로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종량제 시행방식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서식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 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 관 련 법 령

## ■ 『폐기물관리법』

**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**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7.8.3, 2013.7.16>

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8.3, 2013.7.16>

③ 삭제 <2013.7.16>

[제목개정 2013.7.16]

**제15조의2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)**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·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·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.

1.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
2.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
3.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
4. 폐기물처리 신고자(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)

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·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,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3.7.16]